발급번호 : 222549

[발주기관용]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업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삼성전자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첨부. 물품내역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에 관한 첨부. 물품내역서에 기재된 물품의 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조사.공급사와 낙찰자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세부계약 및 제조사.공급사의 내부 사정과 규정에 따라 결정하기로 한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파트너사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제조사의 파트너사가 협의하는 금액 52,620,000 **원(VAT포함)** 으로 한다.
(협약금액에 대한 자세한 물품내역을 첨부. 물품내역서 참조)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협약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협의하고, 제조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IP-PBX, Media Gateway, 메신저, IP전화기 등

2026년 09월 30일

발주기관명 경기도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삼성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2026-09-30 16:30)된 문서입니다.

[주의사항]
* 본 협약서는 삼성전자 협약서 전산발급시스템(http://www.samsungofficeserv.com)을 통해 전자서명으로 발급되었으며, 삼성전자 발급부서(031-279-5830)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무선관리(WiSight_v1.0)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제이넷시스템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1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01 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제이넷시스템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무선관리(WiSight_v1.0)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제이넷시스템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1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01 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주)제이넷시스템즈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SSL가시화(AISVA-1000_Y17)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모니터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8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모니터랩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SSL가시화(AISVA-1000_Y17)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모니터랩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8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모니터랩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WIPS 관리(DeepTrust AIR V2.7), WIPS 센서(AS-500)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시큐어레터(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8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어레터(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WIPS 관리(DeepTrust AIR V2.7), WIPS 센서(AS-500)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시큐어레터(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8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시큐어레터(주)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컨트롤러(SZ100), 무선AP(R550, T750)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루커스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1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루커스네트웍스 (인)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대상시스템 : 컨트롤러(SZ100), 무선AP(R550, T750)
○ 발주기관 : 경기도 김포시
○ 제조사·공급사 : 루커스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7년 김포시 정보통신인프라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 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 ·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과업지시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 · 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 ·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 공급사의 물품공급 ·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 · 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3,100,000원 이하로 한다.(부가가치세 포함)

제4조(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 ·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 공급사는 물품공급 · 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26년 10월 1일

발주기관명 김포시 (인)

제조사·공급사명 루커스네트웍스 (인)